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. 4. 20 선고 2016가단293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16. 4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C 전 254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 부분 지상 조립식패널 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 1동 82.645㎡ 및 같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(ㄴ) 부분 지상 조립식패널 지붕 단층 무허가 창고 1동 9.9174㎡를 각 철거하고, 위 선내 (ㄱ) 부분 토지 82.645㎡ 및 위 선내 (ㄴ) 부분 토지 9.9174㎡를 각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송영복

별지